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2023. 0. 00.)에 따라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가능정원을 임기제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2023. 0. 00.)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 및 순서 변경,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직급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8. 11. ~ 0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퍼센트</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 ----- ----- ----- ----- ----- ----- -----.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 --- <u>10퍼센트</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 ⑦ 삭제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 ----- ----- ----- ----- ----- ----- <u>10퍼센트</u> ----- ----- -----.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삭제>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개발지원협력과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지]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0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일반직 계	305
고위공무원단	1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
서기관	1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계획담당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0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80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전산사무관	6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행정주사	3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7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전산주사	6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0
전산주사보	5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0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8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4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북한 보도매체 및 위성영상 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북한 보도매체 수신·관리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위성영상분석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별표 1의 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0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일반직 계	305
고위공무원단	1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
서기관	1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계획담당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30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8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전산사무관	6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행정주사	30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7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전산주사	6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운전주사보	10
또는 사서주사보	
전산주사보	5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0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8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4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북한 보도매체 및 위성영상 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북한 보도매체 수신·관리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위성영상분석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통일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통일미래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일반직 계	8
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1